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 업체 설명회

□ 개요

- (목적) 목적·기대 성과 등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2세대 스마트축산 확산에 기여하는 유망 업체의 참여 도모
- (시간, 장소) '24. 4.4(목) 14:00~, 축산물품질평가원
- (참석) 축산정책과장(주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장,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스마트축산 ICT 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

□ 논의내용

- '24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공모사업 설명
 - * 사업 목적, 추진체계, 참여요건, 지원 내용, 향후 일정 등
- 공모사업 주요 착안 사항
 - * 축종별 ①생산성 향상, ②분뇨·악취저감, ③에너지 절감, ④방역 강화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다종의 ICT 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 우선 선정
- 패키지 공모사업 관련 질의 응답 등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14:05('05)	인사말씀	축정과장
14:05~ 14:15('10)	'24년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	담당 사무관
14:15~ 14:30('15)	패키지 사업 추진계획	축산물품질평가원
14:30~ 15:25('55)	공모사업 관련 질의 응답	참석자
15:25~ 15:30('05)	마무리 말씀	축정과장

□ 향후계획

- 심사위원 구성(4.22주간), 솔루션 업체 선정(5.6 주간), 지자체 대상 설명회 (5.13주간), 솔루션-보급농가 매칭(6월), 컨설팅-패키지 설치(7월), 사업정산(9월)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22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솔루션과 스마트 축산장비를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사업목적

- 축산 현장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보급하여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2. 용어정의

- (주관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솔루션을 보유·제공 중인 기업*

* 솔루션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기업

- (협력기업)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생성된 DATA를 기록/수집/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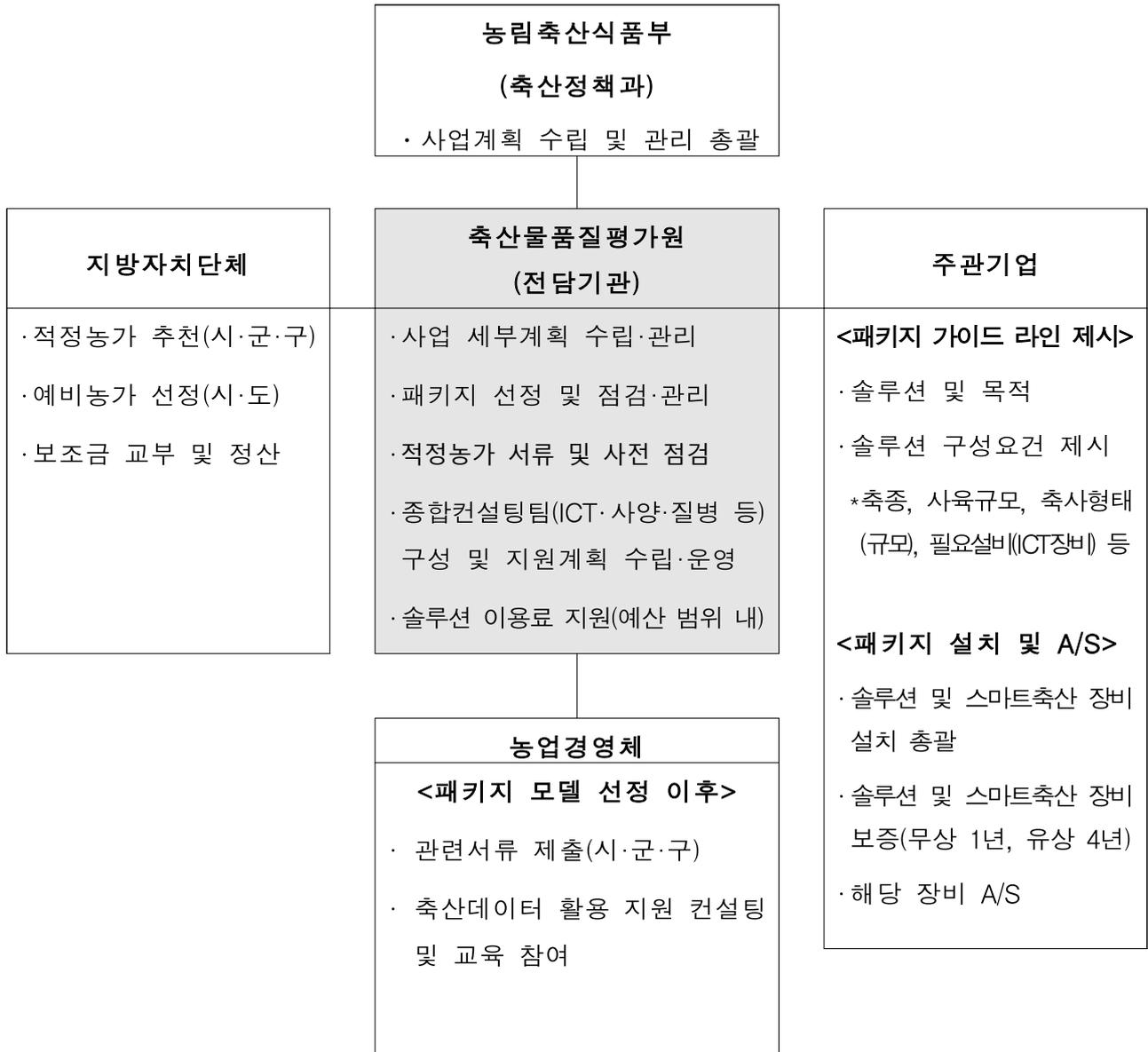
* ①생산성 향상, ②사양·번식관리 효율화, ③약취·탄소저감, ④가축방역 강화, ⑤에너지 효율화 등

** 소·돼지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솔루션은 개체관리를 기본으로 관리해야 함

- (지원농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에서 판단한 농업경영체*

* 낙농·한우(50두 이상),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등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시행지침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 절차

- (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자 선정 → (주관기업) 패키지 설치 가이드를 시·군·구 제시(책자·설명회 등) → (시·군·구) 적용 가능 농가 수요조사 및 시·도에 추천 → (시·도) 사업대상 후보 농가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 최종농가 선정 → (품질평가원) 사전 점검 및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4. 지원자격 등

□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다중(2종 이상)의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스마트장비는 타사가 제작·제공이 가능하며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스마트팜코리아 ICT 장비에 등록된 장비로 제한되며, 해당 장비는 솔루션과 연계되어 활용 또는 제어가 가능해야 함

○ 주관기업은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보증기간, A/S 계획 등 포함)

- 관련 계획에는 패키지 모델(솔루션 +스마트장비) 도입에 따른 효과(실증결과 있으면 함께 제출)와 해당 모델 세부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패키지 모델 설치에 따른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설치 권장 축산농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예시) 축종, 사육규모 및 목적, 축사규격·설비, 당면 현장 문제 등

○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필수 자격 요건]

① 해당 기업에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서비스 중인 기업

② 한국기업데이터 제공 기업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기업

* 한국기업데이터 상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업 농업법인 등은 심의 과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 평가

5. 지원규모

□ (지원예산) 18,700백만원 내외(참여농가 자부담 제외)

구분	신규 컨소시엄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2,000백만원 이내(솔루션 비용 포함, 참여농가 자부담 및 이용료(구독료) 제외) ■ 보급 패키지 모델: 20개 내외 선정 ■ 보급 패키지 모델 도입비용: 500백만원 내외(1개 축산농가 기준,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포함) <p>※ 이와 별도로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의 연간 이용료(구독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p>
지원농가 추천 및 선정 (패키지 선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 수요조사 후 적합 농가를 시·도에 추천 ※ 솔루션 업체는 도입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를 시·군·구에 제시 ■ 시·도는 추천된 축산농가 지원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p>* ① 사업대상 후보 농가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 ② 농식품부는 최종농가 선정 → ③ 품질평가원은 선정된 농가 사전점검 및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p>
사업비 구성	국가보조 30%, 국고용자 50%, 자부담 20%(용자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사업내용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패키지 모델(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그 연계 운영 솔루션) 보급·운영 지원

< 축산 현장문제 예시 >

① 생산성 향상, ②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③ 약취·탄소저감, ④ 가축 방역 강화, ⑤ 에너지 효율화 등

○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스마트장비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보급을 지원

* 예시) (한우/양돈 사양관리모델): 개체관리 + (온습도 측정 → 온습도 조절 → 최적의 사료량 급이 등에 필요한 ①온습도 측정기, ②냉·난방기, ③사료빈 관리기) 등의 스마트장비 세트와 이를 통합제어하는 솔루션

※ 급이량 조정, 가축 건강 체크 등 특정 문제 해소에 관한 개별 ICT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1:1 연계한 패키지 모델은 지양

- 스마트장비 세트와 솔루션 도입·운영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포함
- 솔루션 보급 외에 해당 솔루션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이용료) 일부도 예산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가능하나, 단순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장비·센서 등 지원 불가*

* 지원불가: ①기본 전기통신/상하수 인입, 서버 구축 등 기반조성 및 자본적 지출,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장비, 기자재 등) 구입·구축 비용, ③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등 공과금

7. 사업신청

(신청기간) '24. 3. 22. ~ 4. 30. 18: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 다만,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신청절차) 공고에 명시된 E-mail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기한 : 2024년 4월 30일(화) 18:00(기한 내 도착분까지)

- 제출방법 : 신청 서류를 E-mail*과 우편**이 공모마감 시간까지 모두 제출 시 인정

* E-mail : smart_livestock@ekape.or.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지원단

- 과제공모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 :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지원단

* 사업내용, 신청 서류·방법 관련 : 044-410-7302~4

□ 제출서류(순서) 및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모 참가신청서	[양식1] 참고, 직인 날인 후 PDF 형식으로 제출
2	사업수행 협약서	[양식2] 참고
3	공동응모 협정서	[양식3] 참고 *필요시
4	서비스 요약서	[양식4] 참고
5	사업수행계획서	[양식5] 참고, 무기명으로 작성
6	참여업체 현황	[양식6] 참고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7] 참고
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7-1] 참고
9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양식8] 참고
10	패키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양식9] 참고, 기타 실증사례 별도 첨부 가능
11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	모식도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한 상세 가이드(1~3장) 제출
12	솔루션 소유권 확인서	PDF 형식으로 제출
13	판매실적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장비·서비스 내역서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14	제품·서비스 사용매뉴얼	서비스 소개 카탈로그, 영상 또는 관련 내용 확인가능한 URL
15	사업자등록증	PDF 형식으로 제출
1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증명서로 제출
17	4대보험 가입증명원	4대 보험 가입자명부 포함
1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경영상태 파악
1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설립일이 3년 미만인 경우 가능 범위 내 제출 당해 설립 기업은 '개시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으로 대체
20	데이터수집 항목 리스트	[양식10] 참고, [참고파일1~4] 참고 (해당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자 선정 후 '데이터 자동연계 가이드 제작·배포 예정')
21	발표자료	무기명으로 작성, PDF 형식으로 제출, 10분 이내 발표 분량

□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므로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에 기관명을 밝힐 수 없으며, 기관명 명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들이 감점을 할 수 있음
- 본 공모 관련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최종 선정 후, 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

8.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주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패키지 모델 선정

(1차)적격성 검토	(2차)발표평가	(3차)현장평가	최종 선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축산현장 문제 해소방안 패키지 구성보급 데이터 연계, 활용 사례, 사후 관리 등 발표평가	▶ 설치 농가 장비서비스 실사 가능 점검 기업체 전문역량 파악 등 현장 평가	▶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해 20개 내외 패키지 선정 및 결과 발표, 최종선정 협약 체결
품질평가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품질평가원

□ 평가방법 및 기준

- (1차, 적격성 검토)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누락 여부, 필수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적정성 검토
 - 품질평가원 담당자가 서류 검토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 발표평가) 적격성 검토에서 적합 결과를 받은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실시
 - 패키지 모델의 적합성 : 축산업계 당면과제*와 그 극복을 위해 보급하려는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성**, 패키지사업의 경제성 등 기대효과***
 - * (예시)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최대화, 사양관리 최적화, 약취분뇨 최소화, 탄소저감, 가축방역 건강관리 강화,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신청자가 생각하는 당면과제 작성
 - ** (예시) 00솔루션 및 그 연계 xx스마트장비는 00센서를 통해 약취 및 풍향·풍속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준 상회 시 약취저감장치를 원격·정밀 가동 등 패키지 장비 성능 등
 - *** (예시) 솔루션과 패키지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연중 축산약취를 일정 수준으로 저감하여 약취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 등의 설치 일정·계획의 구체성*, 사업자의 수행능력**, 컨소시엄 참여 스마트축산장비 현황*** 등
 - * (예시) 컨소시엄 농가별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일정, 컨설팅 및 AS 등 사후관리 계획
 - ** (예시) 특허출원, 상용화(제품화) 및 판매실적, 언론평가, 수출 실적, 고객 만족도 등
 - *** (예시) 장비 종류, 성능, 내구연한, 도입가격, AS 계획 등
 - 시장성 등 : 상용화(제품화) 가능성, 축산농가 등의 수용성, 수출 가능성, 유사 사업에 대한 기 지원 여부 등

- (3차, 현장평가) 1·2차 평가를 통과한 패키지 모델 대상으로 주관기업 및 적용중인 농장 방문, 제품 시연 등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
 - (주관기업)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 서비스 운영·관리 환경, 데이터 관리 및 기업체 전문역량 등에 대해 평가
 - (적용중인 농장) 솔루션 효과성,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평가
- (최종 선정) 발표·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 종합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패키지 모델 확정
 - 지원 대상 패키지 모델은 발표 및 현장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부적절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단계별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1차) 적격성 검토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적/부
	필수 자격요건 부합 여부 - 솔루션 소유권, 제품 판매실적, ICT장비 등록 여부	적/부
(2차) 발표평가 (100)	기업신용등급(정량평가)	5
	사업의 이해도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 해결방안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등 - 축산업계 데이터기반 당면과제의 적합성 * ①생산성 향상 ②사양반식관리 효율화 ③약취탄소저감 ④기축병역 강화 ⑤에너지 효율화 등 -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성 등	20
	패키지 모델 구성 및 활용 - 장비 구성 및 설치의 적합성, 자동제어 가능 장비의 다양성, 솔루션 구성 및 복합성, 활용 등의 적정성 - 솔루션 이용료 산정의 적정성, 서비스·솔루션의 상용화 유무	25
	패키지 모델의 데이터 연계 - 데이터 구성, 품질, 보안, 활용 등의 적정성 - 데이터 수집의 다양성(유전, 환경, 사양, 분뇨, 방역, 에너지, 번식, 기타 등) - 데이터 보안 및 관리의 적정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	20
	활용 실적 및 기대효과 - 적용 농가수(서비스농가 포함), 도입 성과, 활용 계획 등의 구체성 - 적용기술의 수출 가능성 등	15
	사후관리(유지보수, 사업관리) 방안 - 품질보증, 유지보수, A/S 등 적정성 - 성과관리 및 계획, 환류 체계, 성과보고 계획 등	15
(3차) 현장평가 (100)	장비 및 서비스 품질점검 - 적용 중인 농가를 방문하여 운영 및 효과 등 점검	50
	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내·외부 의견	30
	데이터 활용·관리 및 문제 대응체계	2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9.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모 대상 및 자격

- (주관) 축산농가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제품화)되거나 예정된 서비스·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이 되고 필요시 주요 스마트축산장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
 - 1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내부 계획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여 추진할 주(主)사업자를 지정
- (기업) ①제공업체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기간 내 장비·서비스를 농가에 보급·적용이 가능하고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팜코리아에 표준화·규격화된 데이터 제공 필수*(장비 설치 이후부터 발생한 데이터)
 - * 선정된 기업은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A/S를 2년 이상 축산농가에 제공하여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타 유사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본 사업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 사업의 참가는 해당 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사의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
 - * 다만, 솔루션 업체는 자체 개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포함해 패키지를 구성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
-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허위 공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사업 공모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사후관리 미흡 등) 및 기타 부정행위(기술 도용 등) 기록이 있는 경우
-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 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항]

- ①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 ②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 유의사항

- 공모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제출

- ◆ 발표평가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므로 제안서(예비사업계획서, 발표자료)에 업체명을 밝힐 수 없으며, 업체명 명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들이 감점을 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 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실증사업 수행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 상기 신청 서류 외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시는 자유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 ◆ 원본 직인 누락 또는 신청서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접수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10. 추진일정

(3월)	과제 공모	(품질평가원)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등
	↓		
(4월)	과제 제안서 접수	(주관기업 → 품질평가원)	공모신청서,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		
(5월)	적격성 검토	(품질평가원)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조정	(품질평가원, 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수행계획서 보완·제출 지자체 알림	(주관기업)	최종확정 수행계획서 제출
	↓		
(6월)	지원대상 농가 선정	시·도 추천을 받아 농식품부가 선정	시·군·구 및 시·도는 지원대상 농가의 축종, 사육규모,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후 농식품부에 추천
	↓		
	사전컨설팅 추진 및 협약체결	(품질평가원 ↔ 주관기업)	농가컨설팅 및 최종확정 후 과제수행 협약체결
	↓		
	사업승인 및 사업비 지급	(품질평가원, 농식품부)	사업 지원금 집행
	↓		
	사업 추진	(주관기업)	주관기업 중심으로 사업수행
	↓		
	사업 운영 및 관리	(품질평가원)	컨소시엄별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 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		
(9월)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품질평가원, 주관기업)	중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10월)	결과보고 및 정산	(농식품부, 주관기업)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최종평가	(품질평가원 → 농식품부 보고)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정산

11. 세부추진절차

가. 지원사업 신청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붙임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 미비하거나 제출자료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과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나. 지원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발표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다. 협약체결

- 협약 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라.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솔루션 및 장비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 보급의 성과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후에 농가별 성과수준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마. 사업완료

- 지원받은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내에 축산농가에 스마트장비, 솔루션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완료
- 주관기업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 효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 받아야함

사. 연차별 성과 활용 보고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연도 후 2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단 한·육우의 경우 3년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연차보고 누락 허위보고 등에 대해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